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69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박성훈 · 이인선 · 신성범
김기웅 · 정동만 · 박충권
이헌승 · 고동진 · 김성원
박정하 · 서지영 · 김승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고 공동체 교류를 위해 이용하는 문화시설, 마을회관 등을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생활문화시설은 전문 인력 부족,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구성 등으로 내실 있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유인책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한 생활문화시설(이하 “우수생활문화시설”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생활문화시설이 아닌 생활문화시설은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 및 인증 연장의 기준·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생활문화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인증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로 한다.

1.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의2(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u> <u>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u>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u> <u>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u> <u>을 우수한 생활문화시설(이하</u> <u>“우수생활문화시설”이라 한다)</u> <u>로 인증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우수생활문화</u> <u>시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u>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u> <u>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u> <u>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u>③ 인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u> <u>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표시를</u> <u>할 수 있다.</u></p> <p><u>④ 우수생활문화시설이 아닌</u> <u>생활문화시설은 인증 표시 또</u> <u>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u> <u>는 아니 된다.</u></p> <p><u>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u> <u>증을 받은 우수생활문화시설에</u> <u>대하여 우선적으로 제8조에 따</u></p>

<신 설>

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 및 인증 연장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우수생활문화시설의 인

증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생활문화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증 취소의 세부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

②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